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의 요약

- 법인이 임원·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퇴직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 총급여의 5% 상당액과 퇴직급여 총추계액×35%(2007·08년은 35%, 그 이후는 30%)⊖기설정퇴직급여충당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내에서 당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며, 실제의 퇴직급여지급사유가 있으면 손금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법인이 합병·분할시 합병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며, 합병·분할합병뿐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수도거래에서도 적용함.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 관련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3조제1항)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의 개관

1) 본 조의 개요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을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여 손금으로 계상, 즉 장부 및 재무제표에 결산 반영하면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잔입액의 손금산입가능금액은 퇴직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나 퇴직급여추계액은 25%(20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가 될 때까지의 부족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한도축소되더라도 한도초과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대상은 임원을 포함한 전사용인이 되는데 주주인 경우에도 임원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주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임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과 적정한 기간손익 대응계산

법인소득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에 의거 의무확정시점에 순자산이 감소되면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는 퇴직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 지급시점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지출 성격상 퇴직에 따른 보상금 및 퇴직후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급여의 일시 준비적 지급의 성격도 있지만, 사용인의 과거 근무기간의 업무기여에 대한 매년·월정 급여의 보완금액이라는 면도 있다. 따라서 누적근무관련 퇴직금을 실제 퇴직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으로 계상한다면 적정한 기

간손익의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제21장)상으로는 장래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장래지출이 확실시되는 부채성충당금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비록 퇴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기간비용으로 대응시킨다. 세법도 이를 준용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퇴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장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재무회계상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외계·세무처리

① 수익비용대응원칙의 부채성충당금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개념과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의거 임원이나 사용자 등의 퇴직금을 실제 퇴직사유 발생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점이 아니라 임원·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은 고정부채의 부채성충당금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만간 당장 퇴직이 확정된 임직원인 경우가 아니면 장기부채성 충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23조 【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1. 단기부채성충당금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은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24조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4. 장기부채성충당금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은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3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14.4 총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② 전직원 퇴직급여 추계액

회계학상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임직원이 일시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이라고 정의되는데, 본 법도 이러한 기업회계 관행을 존중하여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기업회계상으로는 설정대상에 있어서 임원 및 사용인에 관계없이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전임직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설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퇴직급여충당부채】

-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10년내 및 10%씩 분할설정에서 전액설정으로 변경

그러나 많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을 전액(100%) 설정해 오지 않은 현실을 감안, 98년까지는 부족차액을 10년간에 걸쳐 배분하여 비용인식하거나 매년 계상액의 10%씩을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항에 의한 추가설정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기업회계기준부칙 제11조는 그동안 부족분금액을 일시계상하고 전기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였다.

관련법령

◇ 개정 기업회계기준부칙 제11조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이 기준 적용일 현재까지 계상하지 못한 금액은 이 기준 적용일 현재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98. 12. 11 개정)

◇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부칙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추가로 계상하거나 매기 계상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비율(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의 이론적 유형

① 지급확정액 추산법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의 상황예측에 대한 준비의 개념이므로 이를 예측하거나 설정하는 이론적 방법이 다양하며 여기에는 기말지급확정액추산법, 현가에 의한 방법 및 미래지급액예측법 등이 있다.

② 현가할인방법의 수용

현행 세법은 총급여액의 5%를 기준으로 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설정잔액이 총추계액의 2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기말현재 여러 경험률에 의한 실질적인 총추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약 25%가 된다는 경험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설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안도액 계산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1)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개념

① 퇴직금지급의 재무제표상 사전 손비계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기본으로 이를 상회하거나 이를 최소한으로 하는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과 사용인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해 손금으로 장부상 계상한 충당금을 말한다.

② 결산확정상 재무제표에 손비계상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이는 손익계산서상 원가·손실·비용 반영 뿐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의 반영도 포함하는바, 당기손실이 아니면 잉여금처분이나 잉여금감액개념(전기손익수정 손실 등)의 회계처리도 가능하다.

본 법 제23조제1항은 손금계상의 뜻이란 결산확정의 손비계상(결산재무제표에 퇴직급여충당금 반영)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손금산입안도액 계산방법

① 손금산입안도액 계산산식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 총급여의 5%를 당기손금의 한도로 하며 퇴직급여추계액의 25%와 퇴직금전환금 합계액까지를 누적설정액의 최고한도로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총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신설)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총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상기 시행령의 산식표현은 다음과 같다.

갑{퇴직급여지급대상인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가) \times 5/100}과 을{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사용인퇴직급여손금산입 총추계액(나) \times 25/100+국민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계상액}-{설정전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다)} 갑과 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한도금액으로 한다. 결국 계산공식에서 퇴직급여총당금 전입액의 손금산입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임원·사용인 1년간 총급여액, (나)퇴직급여 총추계액, (다)퇴직급여총당금 누적액 및 퇴직금전환금이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서 차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에 추가하면서 확정기여형(DB)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불입시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는 별도로 전액 손금산입하는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설정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하여 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2006. 3. 1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3) 총급여액의 개념과 범위

① 근로의 제공대가로 인한 급여

앞의 산식에서 퇴직급여지급대상인 임원·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이란 첫째,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일 것 둘째, 사용인이나 법인의 임원일 것 셋째, 급여액일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조건 중 사용인의 범위는 다음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대상자의 범위에서 설명하며, 여기서 급여란 여러 명목의 급여 모두를 말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퇴직급여기준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제반수당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을 위한 급여에는 모든 급여나 제반 수당 등이 포함되며, 계속적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금액도 해당된다. 그러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그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급여를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총급여액에 포함시킨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규정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범위의 급여 등은 당해 법인의 실제 지급관행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판단한다. 이밖에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지 않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따라 총급여액의 범위를 결정한다.

③ 사업연도 1년 미만사의 총급여액

총급여액의 범위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라도 1년 법인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과 당해 연도에 사업연도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물론 이 경우도 당해 법인에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나 임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1년 계속급여에 의한 한도계산시의 총 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2007년부터는 1년 미만 근속한 임직원의 급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는 퇴직급여충당금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4) 퇴직급여추계액의 개념과 범위**① 법적 지급의무 있는 금액의 규정**

퇴직급여추계액이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퇴직급여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의 추계액이라고 다음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금액을 최하로 한다.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1. 2. 28 개정)

② 정관 및 내부규정상의 퇴직급여추계액

근로기준법(제90조)상 종업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하는바, 법인설립시의 정관작성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제반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규정하는 퇴직금지급기준에 있어서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내의 평균임금에 계속근속연수에 따른 소정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지급률은 근속연수 정비례나 기간경과할증률 등 장기근속유도를 위해 다양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하여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표준규정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대부분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중 핵심내용의 예시 (목적 및 지급조건)**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이나 사망 및 임원승진시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정한다.

◇ 제○조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급여에 근속연수 등을 감안한 별도의 지급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제○조 【평균급여】

평균급여는 퇴직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총급여액을 3으로 나눈 금액과 퇴직사유 발생일에서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 및 식비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총급여액에는 매월의 월정급여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제반직무·직책수당이 포함된다.

◇ 제○조 【근속연수계산】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 또는 사망일까지 한다. 퇴직일까지는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월로 하며 자의의 정직·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불산입한다.

◇ 제○조 【근속연수 및 지급률】

근속연수를 감안한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다(1년에 1, 계속근무시 지급률 상승).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한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지급액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소요건에 맞추어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서는 최소한의 요건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개념을 주로 설명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지급액은 퇴직자의 퇴직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의 월 환산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④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이란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인 근로기준법(제19조) 원칙인데 1년 단위로 책정되는 급여도 있으므로 1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서 사용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거나 통상 기대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008. 6. 5 개정)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3. 2 개정)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7. 12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7. 12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7. 12 개정)

⑤ **최소한 기준인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시 통상임금보다는 크도록 평균임금의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표면상의 금액이다. 특히 근로자의 퇴직전 급여 상황에 변동이 있거나 법인의 급여지급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이 사용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개념과 범위**①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잔액**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이란 기존에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계상하였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계합계액 중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퇴직급여 실제 지급액과 상계하고 남은 세무상 잔액을 뜻한다. 이는 제반 금액 상계 후의 누적적 잔액의 개념으로 산출과정은 조정명세서를 참조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의 누계액]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 기초잔액(가)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등 설정자의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총당금한도초과 전기부인누계액(다) - 기중 퇴직금 지급(상계)액(라) 및 퇴직급여 중간정산지급액 - 당기중 총당금 환입액(나)

(6) 관계회사간 전출·입 임원·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① 전출·전입법인의 근속기간 통산**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소속사용인을 출자 및 기타관계에 있는 회사에 상호 전출·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법적으로는 전출회사에서 퇴사하여 전입회사로 입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당해 사용인은 퇴직할 의사가 없었고 법인의 수익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회사의 인사발령을 따른 것이다. 세법도 이런 개념을 존중하여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전입법인에서는 전출법인에서의 근속한 기간을 통산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출시의 퇴직금지급 종료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퇴직한 것으로 하여 당해 임원·사용인에게 일단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사용인이 이를 승복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전출시 퇴직되고 종결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사용인 입장에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전입법인으

로서는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한다면 전출법인해당액을 차감하는 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출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5년이고 전출시 평균급여가 100만원, 전입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5년이고 현재의 평균급여가 150만원이라면, 전출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500만원(5년×100만원)이고 전입법인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액의 한도는 150만원×(10년-5년)=750만원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250만원의 부족액 [250=(150×10년-500-750)만원 혹은 {150만원×5년(전출법인분)}-500만원]은 이미 지급받은 500만원의 5년간 금융소득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③ 전출·전입법인간 추계액 승계 및 안분계산

관계회사간에 사용인의 전출·입시 전출법인이 전출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정산지급하지 않으면 미래급여변동이나 제도변경에 대해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전입법인에서 전입후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통산 지급하는 경우는 안분계산해야 한다. 안분계산방법은 사용자가 전입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계산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적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상한 금액으로 각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안분계산시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전출법인이 계상할 퇴직급여추계액]

$$\begin{aligned} & \text{임원·사용인의 근속기간 통산 퇴직급여추계액} \\ & \times \frac{\text{전출법인자체의 퇴직급여상당액}}{\text{전출법인의 퇴직금상당액+전입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 \end{aligned}$$

[전입법인이 계상할 퇴직급여추계액]

$$\begin{aligned} & \text{임원·사용인의 근속기간 통산 퇴직급여추계액} \\ & \times \frac{\{\text{전입법인자체의 퇴직급여상당액}\}}{\text{전입법인자체의 퇴직금상당액+전출법인자체의 퇴직급여상당액}} \end{aligned}$$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대상자의 범위

① 1년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

본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은 1년 미만 근로자 임직원이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는 임직원 총급여의 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2006년까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 총급여의 10%'라 하여 1년 이상의 계속 근무를 요건으로 함), 제2항은 사용인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라고 하여 1년 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사용인 전원'의 개념에는 별 논란이 없는데,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손금용인되기 위해서는 첫째,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지급규정을 정하고(2006년까지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 둘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셋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세번째 요건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속' 개념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종료일 자체(12월 31일자로 퇴직자) 혹은 그 이전에 퇴직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 (2006년까지)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의 범위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이나 사용인'이어야 하므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설정한다하여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세법상의 손금산입 가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추계액은 법인의 총급여액의 범위 및 퇴직급여추계액에 합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의 개념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전체근속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의미하는바, 서류상으로는 일시적으로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경우도 동 기간동안 사실상으로는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세법상 계속근로자로 본다. 그리고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계회사에서 전입

되어 온 사용인은 앞의 설명과 같이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가능 대상자이다.

②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세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세법상의 손금용인한도액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는 있는 것이다. 즉, 법인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규정의 단서 조항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거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둔다면 동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반면에 본 법 시행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법인자체의 규정에 관계없이 반드시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만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일괄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자체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으로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1년 미만만 근로한 사용인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중도 입사자 및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전사용인들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인 경우도 사업양도법인 및 개인사업자기간 등과 같이 법인설립이전부터 계속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이 있다면 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법인의 임원과 모든 사용인

(1) 사용인 · 근로자

① 근로자의 개념

사용인을 위해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는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임금적 고용관계

여기서 사용인 혹은 근로자의 상대개념으로 사용자가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라고 하여 근로자와 구분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별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업 실적을 목적으로 하느냐의 목적개념에 의거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실적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용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운송사업장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차주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이에 고용된 월급제 운전기사만 근로자이다. 이밖에 수금원이 그 수금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법인에 대하여 종속관계도 없고 임금관계도 아니므로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상의 동등 계약자인 것이다.

(2) 법인의 임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통상 사업경영의 담당자인 법인의 이사, 감사, 중역 및 임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나 세법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도 포함된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상장법인의 1% 미만 소액주주인 임원뿐 아니라 출자임원도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출자임원은 경영을 담당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사업주·소유주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인 혹은 근로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아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

1) 손금산입을 위한 결산반영

① 재무회계상 당기비용으로의 계상금액

본 조 제1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회계상 결산에의 반영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법 제23조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결산확정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라고 선언적 정의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아직 지출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며 회사의 내부회계처리금액이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의거 비용이나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장부와 재무제표에 손실·감액 혹은 비용인식해야 손금산입된다.

② 자산으로 계상금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의 전부나 일부가 고정자산이나 건설가계정 등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산으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도 당기에 손금으로 전액 계상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한다. 즉, 자산계상분을 별도구분 파악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는 것이 편리하고 관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③ 전기손익수정손실토도 계상반영가능

법인의 손익구조가 나쁘면 그때그때 적절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업도 나중에 재무수지가 호전되면 설정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한꺼번에 계상하기도 하며, 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 해당액만을 일반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전기해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기손익수정손실항목으로 계상된 금액도 손금산입된다. 즉, 손익수정손실로 잉여금감액 회계처리된 퇴직급여충당금도 법인의 순자산 감소사항의 하나이므로 손금계상되지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비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도 가산하여 퇴직급여충당

금의 시부인계산을 한다는 뜻이다.

④ 퇴직보험급여충당금과 대체계상 손금인정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이를 해약하는 경우 퇴직보험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계상할 수 있다. 회계처리 분개하면 기존 설정된 퇴직보험급여충당금을 소멸시키기 위해 차변에 퇴직보험급여충당금 ×××원, 대변에 퇴직보험급여충당금환입액(특별이익) ×××원 ; 퇴직급여충당금의 신규 및 추가설정을 위해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특별손실) ×××원,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 ×××원으로 총액 반영한다.

여기서 손익계산상 특별항목으로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법인의 경우는 퇴직보험급여충당금을 상기와 같이 별도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 ×××원, 대변에 퇴직보험급여충당금환입액(특별이익) ×××으로 계상치 아니하고 차변에 퇴직보험급여충당금 ×××원,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 ×××원으로 부채간의 직접적 순액 계정대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퇴직보험급여충당금의 환입액 상당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하여 퇴직급여충당금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세무상 시부인계산함이 타당하다. 즉, 이는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의 상계 후 순잔액으로 손익계산상 비용과 이익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도 결산상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세무상 손금·익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퇴직보험, 퇴직신탁 등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되므로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을 불허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신탁의 보험료, 부금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않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기 납입 보험료 등 적립금 운용수익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부칙 제19조 【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부금의 손금산입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등】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 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신탁

의 보험료·부금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안도초과부인액의 손금산입범위

① 부인누계액의 손금산입가능성

세법상의 한도초과 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금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지급액이라면 상계하고 난 후의 초과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다만, 기존 금인정된 충당금은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그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가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신설)

② 퇴직보험료 손금산입과의 대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면서 기간손익의 적정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만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충당금으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차변에 비용·원가손실반영 및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설정하면서 25%만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유보하고 외부예치 퇴직연금부담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유보로 대응시킨다.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무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액이 누적된 경우 부인액 및 미설정액에 대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손금산입한다. 경우에 따라 퇴직보험급여충당금과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퇴직

금추계액을 초과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세무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계상을 허용하고 기업회계상의 특별이익계상과 조정하여야 한다.

5.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제출 (법 제33조제5항·제6항)

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제출의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관련조정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항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 및 그 작성사례는 '(2)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를 참고한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동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그 보정을 요구하여 형식과 내용이 적법한 때에는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 례】

① 총급여액 지급내역

| 계 정 과 목 | 총 급여액 | |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 |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 | |
|---------------|-------|---------------|------------|---------------|---------------|-------------|
| 판매 관리비 : 임원급여 | 3명 | 180,000,000 | 3명 | 180,000,000 | | |
| 판매 관리비 : 급료수당 | 30명 | 602,000,000 | 23명 | 548,000,000 | 7명 | 54,000,000 |
| 제 조 원 가 : 임금 | 110명 | 1,678,000,000 | 85명 | 1,445,000,000 | 25명 | 233,000,000 |
| | 143명 | 2,460,000,000 | 111명 | 2,173,000,000 | 32명 | 287,000,000 |

②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충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③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 (143명) 1,798,000,000원

④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1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② 총급여액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25/100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③ 한도초과액 115,800,000은 손금불산입

- 퇴직금지급관련 내부충당금 및 사외예치금의 회계처리 및 손금산입 개념 비교 -

| 구분 개념 |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충당적립) | 퇴직연금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외부적립) |
|----------------|---|--|---|
| 근거규정 및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2000. 10. 1부터 신규불입 안됨) |
| 근로기준법 관련성 | 『근로기준법』 제34조(계속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급여)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시행령 제11조 | 좌 동 |
| 설정방법 및 자금흐름 | 회사내부설정 및 외부지출 유보(손실, 비용원가 혹은 잉여금 감액계상) | 회사외부적립, 자금유출 | 회사외부적립, 자금유출 |
| 회계처리 | (차) 퇴직급여 100 (혹은 잉여금) (대) 퇴직급여 100 충당금 | (차) 퇴직연금 100 운용자산 (대) 현 금 100 (차) 퇴직연금 100 운용자산 (혹은 잉여금) (대) 퇴직보험 100 예치금 | (차) 단체퇴직급여 100 예치금 (대) 현 금 100 (차) 퇴직급여 100 (혹은 잉여금) (대) 단체퇴직 100 급여충당금 |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 | | |
|-----------------------------|--|--|---|
| <p>세무상한도 및 손금산입 방법세무 조정</p> | <p>총퇴직급여추계액×25%만 손금인정 나머지 75%는 내부충당해도 손금불산입 유보로 반영됨. 설정 안하면 손금반영 할 수 없음.</p> | <p>내부충당금 25%의 전액 손금산입 전액의 손금산입가능(외부예치금에 한함). 금감원의 적극 권장상품. 퇴직금을 직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충당금설정해야 함.</p> | <p>내부충당금 35%외의 나머지 전액 손금산입 가능. 내부충당금 없으면 추계액×100% 전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외부의 예치금납부액에 한해서 손금산입하며, 충당금을 회계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도 손금산입(△유보)가능함.</p> |
| <p>임금채권 부담금</p> | <p>경감혜택 없음(부담금=임금총액×0.2%)</p> | <p>임금채권부담금경감(『임금채권보장법』 제9조)</p> | <p>좌 동</p> |
| <p>손익계산 효과</p> | <p>충당금 손금산입의 법인세 부담줄이기 위해서는 필히 재무제표 반영해야 하므로 손익감소, 잉여금감소가 필수적임.</p> | <p>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그러나 손익감소, 잉여금감소시키면서 충당금 반영해야 함.</p> | <p>세무조정만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므로 손익감소, 잉여금감소시키지 않고서도 법인세부담 줄일 수 있음.</p> |

[별지 제32호 서식] (2010. 3. 31 개정)

(앞 쪽)

| | | | | |
|------|------------------|--------------|---------|--------------|
| 사업연도 | 2007. 1. 1.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주) 안 건 |
| | ~ 2007.12.31. | | 사업자등록번호 | 101-81-12345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 | | | | | | | |
|------------------------|---|------------------------|-----------------------------------|--------------|----------------------------------|-------------------|---------------------------------------|---------------|-----|
| 영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⑩의 계) | | | | ② 설정률 | | ③ 한도액 (①×②) | | 비 고 |
| | 2,173,000,000 | | | | 5/100 | | 108,650,000 | | |
| 영 제60조 제2항및제3항에 따른 한도액 | ④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 ⑥ 기중 총당금 환입액 | ⑦ 총당금 부인 누계액 | ⑧ 기 중 퇴직금 지급액 | ⑨ 차감액 (④-⑤-⑥-⑦-⑧) | ⑩누적한도액 (⑩× $\frac{25}{100}$ + 퇴직금전환금) | ⑪ 한도액 (⑩-⑨) | |
| | 578,000,000 | - | - | 38,000,000 | 104,000,000 | (△436,000,000) | 539,400,000 | 13,500,000 | |
| 한도초과액 계산 | ⑫ 한도액 (③과 ⑪중 적은 금액) | | | | ⑬회사계상액 | | ⑭한도초과액 (⑬-⑫) | | |
| | 13,500,000 | | | | 129,300,000 | | 115,800,000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 | | | | | | |
| 구 분 | ⑮총급여액 | | ⑯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 | ⑰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 | ⑱기말현재 사용인 또는 임원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 | |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 계정명 | | | | | | | | | |
| 임원급여 | 3 | 180,000,000 | | | 3 | 180,000,000 | | | |
| 급여수당 | 30 | 602,000,000 | 7 | 54,000,000 | 23 | 548,000,000 | | | |
| 제조비임금 | 110 | 1,678,000,000 | 25 | 233,000,000 | 85 | 1,445,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43 | 2,460,000,000 | 32 | 287,000,000 | 111 | 2,173,000,000 | | 1,798,000,000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II.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과 상계 (법 제33조제2항)

1. 임직원퇴직급여지급액과의 상계

①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상계

본 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적법히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액이 있다면 임원·사용인의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급여지급시 당해 설정된 충당금 금액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②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반영

일반적으로 임직원 퇴직시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에 가입되면 해당 퇴직자의 보험금환급액을 먼저 찾아오며, 운용회사 환급분이 퇴직금지급액에서 부족하면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계정으로 지급한다. 총설정액도 부족하다면 부족액만큼은 당기 손익계산상 퇴직금을 비용처리한다.

③ 퇴직급여지급시 계정회계처리 반영순서사례

예를 들어

- 퇴직연금 총 5천만원(퇴직사유발생시 원칙적으로 해당 비율액 환급됨)
- 퇴직급여충당금 총 2천만원
- 퇴직자의 총퇴직금 3천만원
- 연금운용회사환급액 5백만원인 경우

① 퇴직연금운용자산사용 : 500만원

② 퇴직급여충당금사용 : 2000만원(총액 2000만원 전액사용)

③ 모자라는 500만원(=3,000-500-2000)은 당기퇴직금으로 비용반영함.

(1) 1년간 근속한 임원·사용인 퇴직급여와 상계

① 직접적 상계

임·직원 퇴직시 장부상 설정계상된 충당금으로 먼저 상계 지급하며 지급할

급분도 손비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추가액도 손비처리할 수 있으므로 손금반영금액이 더 크다.

여기서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므로, 퇴직일 현재나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시도 직접 당기의 비용으로 계산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잔액의 부족시 외계·세무처리

① 당기 직접 비용처리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액이 기중의 퇴직급여지급과 상계하여 더 이상 잔액이 없거나 전기부터의 충당금 잔액이 아예 없는 경우, 당기의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기 비용으로 직접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기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기 이전이라도 일단 먼저 설정한 후에 설정한 금액과 차감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이로써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퇴직급여 지급액의 발생원천에 대하여 당기분이 있고 전기분이 있어 이를 구분하여 기간손익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추가설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의무확정주의 개념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한꺼번에 일시계상한다.

② 직접 손비계상액의 충당금설정잔액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은 사업연도초나 중간 혹은 결산기말 언제나 계상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 회계처리된 금액 중 당기설정충당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문제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기중에 설정 및 상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법인의 당기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한도 계산시의 시부인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밖에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비록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잔액이 있었으나 기중 퇴직금 지급액에 미달하여 법인이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

고 이를 퇴직급여지급액과 상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III.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1. 법인 합병·분할합병시의 퇴직급여충당금 인계

(법 제33조제3항)

① 세무상 인정되는 금액만의 인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 소멸한 법인의 합병 당시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 금액은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되어 존속하거나 신규설립된 법인 및 상대방법인이 합병일 현재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합산된다. 즉, 합병·분할합병으로 소멸청산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현재의 상대방 합병법인 등에 인계한 금액은 적법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본다는 것이다.

법인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를 퇴직일로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이를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소멸법인 혹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이란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한다. 해산·청산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의 100%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하여도 승계받은 합병법인 등의 적법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청산소멸법인이 기존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상으로 손금융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충당금계상액을 인계하면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② 근속기간 통산 여부

합병이란 법인의 제반 권리 및 의무가 합병법인 등에 인계되는 것이므로 사 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이의 근속기간은 전기간을 통산

하여 퇴직금 및 기타의 규정을 적용함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합병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도 상호승계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소멸청산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합병법인 등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계받은 사용인에 대한 합병법인 등의 세무상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세법상 해석이다. 이는 퇴직충당금 승계없는 경우 지급의무도 없다는 논리인데 합병이란 포괄적 의무승계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하는 차원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기업회계상 기업인수·합병회계준칙 규정

기업회계에 관한 준칙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자산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의 승계시 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설정하여 승계하여야 하는데, 설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합병법인의 부채증가·이익감소(잉여금 감소)의 회계처리로 승계된다는 뜻이다.

2. 사업 포괄양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인계 (법 제33조제4항)

사업의 포괄 양수도란 사업상 제반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포괄양도되는 사업부분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된다. 합병 등과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 및 손금산입규정이 그대로 포괄양도에도 적용되도록 본 항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여 양도사업자의 양도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사업양도 후 양수법인에 인계하고, 퇴직금도 전사업자 근무기간도 통산하기로 하였다면 추계액을 통산하여 세무반영한다.

따라서 사업포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그대로 세무상 승계받는 것으로 본다.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사업 포괄양도시 퇴직금 및 충당금 계산

사업의 포괄 양수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와 크기에 따라 승계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산정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결국 양도일 전에 양도사업장에서 당해 사용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는지와 퇴직금의 50% 이상을 승계받았는지가 그 결정기준이다.

① 50% 이상 승계시 통산가능

사업양도·양수시 승계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중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통산할 수 있다.

② 50% 미만 승계시 통산 불가

승계일 현재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의 50% 미만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2) 사업 포괄양도의 개념과 범위

① 사업상의 제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에만 양도법인의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이 승계되며 근속기간 등을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면 승계되지 않을 뿐더러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즉 종전사업자의 퇴직으로 보아 정산종결되고, 신사업장에의 신규입사로 본다.

여기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에 공하는 재산 등의 제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사업주체를 승계시키는 개념으로서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기본통칙 41-0...1 및 41-0...2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 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② 일부 사업장 단위의 포괄양도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중 일부나 한개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당해 사업의 포괄양도 개념이 준용되어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승계되고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다. 즉, 양도사업자의 전 사업장을 일괄하여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양도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중 1개의 사업장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수법인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았더라도 승계된 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급여 계산시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세무상으로만 손금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기업회계상으로는 설정 가능하고 사적계약상·근로기준법상 지급할 수도 있다.

3)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승계 여부

① 양도법인 한도초과액의 승계계상

사업의 포괄양도시 상호간의 계약상 부채를 적정평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전액을 설정하거나 추가계상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에는 손금부인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사업의 포괄양수법인이 양도사업자의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인수시 인수금액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손금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다더라도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상 사업양수시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산입 금액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양수시 인계받은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포함하지는 않는데 사업양도법인의 손금불산입금액까지 양수법인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으로 보아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적법히 손금산입된 금액만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바, 승계받은 양도법인의 손금부인액을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으로 간주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요컨대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금액은 양도법인이 법인세법상 한도계산한 사업 양수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금액을 말하며 양수법인이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과 상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중 손금부인액 해당액 만큼만 손금에 산입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② 양도법인 부인액의 승계처리사례

【사 례】

- 양도법인의 총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 4억원(양도일 현재의 총추계액 100%임)
- 세무상의 한도는 추계액의 25%에서 제한받았음(1억원).
- 양도법인의 손익계산상 한도초과액 3억원은 손금불산입되고 퇴직금 모두 인계함.

| 상 황 \ 구 분 | 총당금 한도액만 인계시 | 총 총당금 인계시 |
|------------------------|--------------------------|------------------------|
| 인계금액 | 1억원 (손금산입한도범위) | 4억원 (한도초과 3억원 승계) |
| 양수법인의 추가설정가능액 (회계상) | 3억원(손금부인되지 만 향후 추인가능) | 없음. |
| 양수법인의 퇴직금 3억원 지급 | 7.5천만원 자체부인 액의 손금추인 | 7.5천만원은 승계부인액의 손금추인 |
| 손금부인액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 | 해당 없음 | 7.5천만원이 손금추인 안됨. |
| 승계된 경우의 과세상의 손금 | 7.5천만원 | 7.5천만원 |
| 승계 안된 경우의 과세상의 손금 | 7.5천만원 | 없음. |
| 세무조정 | 아무 문제없음. | 논란있음. |

위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승계되지 않으면 세법상 한도초과되는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추인이 안되므로 양도·양수법인은 7천5백만원만큼 이중과세되어 불합리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부인액은 부인액인 상태로 승계됨이 타당하다.

위의 경우 사업양도시 양도법인 입장에서 그동안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 설정하여 손금 처리한 후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인 4억원을 인계·인수한다면 세법상 한도초과액 3억원은 손금부인한다. 반면에 양수법인이 인수받은 금액 전액을 차변에 제 자산 4억원,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 4억원으로 회계처리하면, 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인수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이 다 소멸될 때까지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가 없다.